

勞 動 經 濟 論 集
 第40卷 第3號, 2017. 9. pp.57~77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안심소득제의 효과*

박 기 성** · 변 양 규***

우리는 현행 복지제도의 노동공급 역유인 효과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부족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음소득세인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를 제안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노동공급 증가로 국내총생산이 상승하고, 저소득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대로 소득격차도 완화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정도는 기존 제도 및 기본소득제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음소득세, 기본소득제, 안심소득제, 노동공급 증가, 소득격차 완화

I. 서론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책무로 인식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지원하느냐이다. Friedman(1962: 191)이 제시한 두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

논문 접수일: 2017년 7월 18일, 논문 수정일: 2017년 9월 24일, 논문 게재확정일: 2017년 9월 27일

* 이 논문은 박기성·변양규(2017)를 투고한 것이다. 박기성(2017), 변양규(2017a), 변양규(2017b)는 각각 부분적으로 박기성·변양규(2017)를 수정한 것이다. 유익한 논평을 주신 심사자들과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감사한다. 이 논문은 2017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 (교신저자)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kpark@sungshin.ac.kr)

*** 김앤장 법률사무소 위원 (econbyun@gmail.com)

제는 지원해야 될 개인이나 가구를 정확히 식별하여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어떤 기준에 따라 특정 집단을 선정하여 지원하면 그 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이 저소득 취약계층이 아니므로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가 저소득 취약계층은 아니므로 이 원칙에 어긋난다. 두 번째 원칙은 그 지원이 가능한 한 시장기구(market mechanism)를 통해 이루어져 시장을 방해하거나 왜곡시키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최저가격(price floor)으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inefficient resource allocation)을 야기하므로 두 번째 원칙에 어긋난다. 이 두 원칙에 충실한 제도로 Friedman(1962: Ch. 12)은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제안하였다.

박기성·변양규(2017)에 근거한 박기성(2017)과 변양규(2017a)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현재 우리나라 복지 제도를 개관하고 한국형 음소득세인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와 비교·분석하여 후자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변양규(2017a) 및 변양규(2017b)는 2015년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하였으나, 본 논문은 안심소득제를 소개하면서 2016년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안심소득제의 소요예산을 추정하고 기본소득제와 소득격차 완화 효과 등을 비교한다.

우리나라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자녀장려금이다. 다음 장에서는 박기성(2017)을 따라 이 두 제도를 개관하고 평가한다. 제Ⅲ장에서는 박기성(2016a)과 박기성(2017)이 제안한 안심소득제를 소개한다. 제Ⅳ장과 제Ⅴ 장에서는 2016년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각각 안심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추정하고 기본소득제(universal basic income system)와 소득격차 완화 효과 등을 비교한다. 마지막 제Ⅵ장에서는 시사점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Ⅱ.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자녀장려금

1. 기초생활보장제도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주거, 교육, 자활, 의료, 해산, 장애의 7개 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현재 각 급여들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월 중위소득 4,391,434원의 29%인 1,273,516원에 미달하는

가구(4인 가구, 이하 동일)에게 1,273,516원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6a).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것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것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구해진다(보건복지부, 2016a).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월 1,888,317원(월 중위소득 4,391,434원의 43%) 이하인 가구에 매월 최대 307,000원(서울)을 지급하는 것이다(국토교통부, 2016).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월 2,195,717원(월 중위소득 4,391,434원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과 1인당 연 131,300원의 교과서대금(부교재비 포함) 그리고 53,300원의 학용품비를 지급한다.¹⁾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월 1,756,574원(월 중위소득 4,391,434원의 40%) 이하인 가구의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한다(보건복지부, 2016b). 1종 수급자는 이들 중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등이다. 그 외에 행려환자, 이재민, 의사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도 1종 수급자이다. 2종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소득인정액이 월 1,756,574원) 중 1종 수급자가 아닌 가구이다.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때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표 1>과 같다.

<표 1> 의료기관 등을 이용 시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출처: 보건복지부(2016b).

1) 출처: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lInfSno=281> 교육부(2015).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월 2,195,717원(월 중위소득 4,391,434원의 50%) 이하인 비수급자(차상위자)가 자활사업에서 근로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6c). 자활급여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서 자활급여를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든다.

해산급여는 생계, 의료,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출생영아당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당 7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서울 거주 4인 가구는 생계급여 1,273,516원과 주거급여 307,000원을 합한 1,580,516원을 매월 지원받으므로 연 지원액은 18,966,192원이다. 이 가구에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1,635,400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연 지원액이 2천만 원을 상회한다.

기획재정부(2016)에 의하면 각 급여의 예산 등은 다음과 같다. 2016년 생계급여 예산은 3조 2,728억 원이고 지원대상은 135만 명, 81만 가구(2015년과 동일)로 예상된다. 주거급여 예산은 1조 289억 원이고 지원대상은 80만 가구로 예상된다. 교육급여 예산은 1,451억 원이다. 의료급여 예산은 4조 7,224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47만 명과 타법 수급자 10만 명을 합해 157만 명으로 예상되므로 1인당 연 300만 원 정도를 의료급여로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2016년 예산에 의하면 자활사업 예산은 자활급여 3,273억 원을 포함하여 3,802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5만 명(2015년과 동일)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주거 및 교육급여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업무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이 전담한다.

기획재정부(2016)에 의하면 위의 7개 급여 외에 자산형성지원(2016년 예산 678억 원)과 긴급복지지원(2016년 예산 1,013억 원)을 포함한 2016년 기초생활보장 부문의 예산은 10조 1,311억 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개 급여 중 1개 급여라도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210만 명으로 예상된다.

2. 근로 및 자녀장려금

국세청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는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및 자녀장려금(child tax credit)이다. 국세청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조금이

라도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근로 및 사업소득에 따라 일정한 공식에 의해 산정된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연 1회 최대 각각 가구당 210만 원과 부양자녀당 50만 원씩 지급한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의하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총소득, 주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 요건은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인 것이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1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요건은 무주택이거나,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재산 요건은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것이다. 근로나 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가구에는 그 소득의 21%, 1,000만~1,300만 원 사이 가구에는 210만 원, 1,300만~2,500만 원 사이 가구에는 점점 작아져서 2,500만 원이 되면 지급하지 않는다. 주목할 점은, 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급여 수급자도 수령 가능하다. 그러므로 저소득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및 주택급여 등에 추가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도 부양자녀, 총소득, 주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주택은 무주택이거나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재산은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2016)에 의하면 자녀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수령할 수 없지만, 생계급여 미수급자이면서 교육급여 수급자는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의하면 구체적인 자녀장려금은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600만 원 이상 2,550만 원 미만이면²⁾ 부양자녀의 수×50만 원이다. 2,55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이면 부양자녀수×[50만원 - (총소득 - 2,500만원)×1,500분의 20] 이다.

국세청(2016)에 의하면 2016년에 근로장려금 1,997천 가구, 자녀장려금 1,120천 가구, 둘 다는 569천 가구, 총 2,548천 가구에 신청을 하라고 안내되었다. 국세청 담당자와 통화한 바에 따르면 여기에 소요되는 (세입)예산은 근로장려금 1조 1,287억 원, 자녀장려금 6,957억 원, 총 1조 8,244억 원이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소득지원국의 소득지원과 및 소득관리과 2개 과(課)가 전담한다.

2) 홑벌이가구는 총소득이 600만 원 미만이어도 부양자녀의 수×50만 원을 받는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2).

3.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의 평가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273,516원 미만이면 생계급여로 월 1,273,516원, 연 15,282,192원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월 1,273,516원 미만의 근로나 사업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소하므로 한계소득세율(marginal income tax rate)이 100%이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므로 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disposable income)은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의 합이 된다. 이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는다면 주거급여(서울 거주)로 연 3,684,000원(월 307,000원)을 추가하여 처분가능소득은 [18,966,192원 + 근로장려금]이 된다.³⁾

Moffitt(2003)을 따라 분석한 박기성(2016a)과 박기성(2017)에 의하면 근로나 사업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므로 일할 유인이 매우 낮다. 임금률(예: 시간당 임금)을 w 라고 하자. 근로장려금으로 인한 임금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이 연 소득 1,000만 원까지는 $0.21w$ 에 지나지 않아⁴⁾ 이것이 유보임금률(reservation wage rate)보다 낮다면 노동공급이 전혀 되지 않고 유보임금률보다 높더라도 약간만 일을 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매월 100만 원씩을 벌 수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할까? 이 일을 하면 연 1,200만 원의 소득인정액이 생기므로 그만큼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생계급여가 줄어들고,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으로 210만 원을 받는다. 결국, 이 일을 함으로써 증가하는 처분가능소득은 연 210만 원에 지나지 않아 이 일을 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재정패널 등의 자료에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가구의 비율이 매우 낮은 이유이다.⁵⁾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일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약간만 하거나 정부에 알려지지 않는 음성적인 소득을 받는 일을 하게 된다.

3) 2017년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연 16,082,568원(월 1,340,214원), 주거급여(서울 거주)는 연 3,780,000원(월 315,000원)으로 [19,862,568원 + 근로장려금]이 된다.

4)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계소득세율은 79%이다.

5) 이 점을 지적한 심사자에게 감사한다.

Ⅲ. 안심소득제

우리는 위에서 지적한 현행 복지제도의 노동공급 역유인 효과를 방지 내지 완화하기 위해 박기성(2016a) 및 박기성(2017)과 같이 안심소득제를 제안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개 급여 중 생계, 주거, 자활급여 및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을 폐지하고 대신에 안심소득제를 신설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 원 미만까지 안심소득제를 통해 현금을 지원하고 그 이상의 소득 가구는 현행 소득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⁶⁾ 2016년 4인 가구의 월 중위소득은 4,391,434원이고 연 중위소득은 52,697,208원 이므로 연소득 5,000만 원은 우리나라 4인 가구의 연 중위소득 수준이다. 안심소득세율은 40%이다. 구체적으로 임금률 w , 근로시간 t 라고 하면 안심소득은

$$0.4 \times (5,000\text{만원} - wt)$$

이다. 그러므로 처분가능소득은

$$wt + 0.4 \times (5,000\text{만원} - wt) = 2,000\text{만원} + 0.6wt$$

이 된다. 안심소득제의 특징은 절편(2,000만 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임금선 기울기의 절댓값($0.6w$)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와 주거급여의 합은 절편(18,966,192원)만 있는 것이고, 근로장려금에 의하면 임금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0.21w$ 에 불과하다. 안심소득제는 이 둘을 결합하면서 임금선 기울기의 절댓값을 3배 정도 높이는 것이다. 이 안심소득제에 의해 국가는 모든 가구(4인)에 적어도 연 2,000만 원을 보장한다.⁷⁾ 무소득 가구는 국가가 보조금으로 연 2,000만 원을 지원하며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와 상쇄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소득의 60%만큼씩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여 한계소득세율은 40%가 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근로장려금보다 더 강한 근로유인을 제공한다.

우리는 제Ⅱ장에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가 월 100만 원을 벌

6) 그러므로 그 이상의 소득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없다.

7) 국가가 적어도 1인당 연 500만 원을 보장한다.

수 있는 공식부문(formal sector)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일을 할까? 이 일을 하면 연 1,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생기고 안심소득제로 국가로부터 $0.4 \times (5,000\text{만원} - 1,200\text{만원}) = 1,520\text{만원}$ 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아 처분가능소득은 연 2,720만원이 된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 직장의 일을 하지 않고 생계 및 주거급여로 연 18,966,192원(2016년 기준)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만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이 일을 하고 연 1,52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어, 국가의 지원액이 3,766,192원만큼 감소한다.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이와 같이 현행 제도보다 더 강한 근로유인을 제공하여 노동공급을 증가시켜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노동소득의 증대로 인해 국가의 지원액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처분가능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려 큰 도움을 줄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되었다. 여기에 209(시간)를 곱하면(유급휴일 포함) 월급여는 1,573,770원이고 연봉으로는 18,885,240원이다. 최저임금 이외에 이 가구에 소득이 없고 최저임금으로 받은 금액이 모두 소득인정액이 된다고 하자. 2017년 소득인정액이 16,082,568원 이상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가구는 2018년에도 생계급여를 전혀 받지 못한다.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근로장려금으로 1,085,000원(맞벌이가구)을 2019년 받게 되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처분가능소득은 19,970,240원이 된다.

반면에, 위에서 서술된 대로 안심소득제가 시행된다면 18,885,240원에 추가하여 12,445,904원이 지급되어 그의 처분가능소득은 연 31,331,144원(월 2,610,929원)이 된다. 이것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원으로 인상할 경우의 연봉 25,080,000원(월 2,090,000원)보다 훨씬 높다. 박기성(2016b)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심대한 고용감소를 야기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증대하여 경제성장을 하락시킨다.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하지 않아도 저소득 가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및 경제성장을 하락 효과 대신에 노동공급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기성(2016a)과 박기성(2017)은 또 다른 중요한 안심소득제의 이점으로 행정비용의 절감과 예산 누수의 최소화를 지적한다. 생계, 주거, 자활급여와 관련하여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를 판정하기 위한 각종 조사와 수급자 관리, 자활 사업 관리 등 여러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복지 혜택(welfare benefits)의 전달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비리 등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안심소득제는 기존의 소득세를 부과·징수

하는 국세청 자료와 행정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세금 징수 과정에 수반되는 정도의 누수만이 발생할 것이다. 담당하는 행정조직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의 대부분이 국세청의 소득지원국으로 통폐합되는 등 축소될 것이다.

IV. 안심소득제의 소요예산 추정⁸⁾

안심소득제 하에서 지원 금액은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인정소득’과 안심소득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우선, 2016년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산출한 이후 안심소득제로 대체되는 각종 사회수혜금⁹⁾을 공제하여 인정소득을 계산한다.

안심소득제 하에서 기준소득은 특정 가구가 전혀 근로를 하지 못해 소득이 없을 경우라도 1인당 연간 최소 5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설계되었다. 또한 소득이 있지만 기준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부족분의 40%를 지원받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안심소득제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소득은 가구 구성원 1인당 1,250만 원으로 책정된다. 안심소득제 하에서 지원 금액은 아래 예시처럼 결정된다.

$$\text{가구규모별 기준소득} = 1,250\text{만원} \times \text{가구인 수}$$

$$\text{안심소득제 지원금} = \{\text{가구규모별 기준소득} - \text{안심소득제 인정소득}\} \times 40\%$$

$$= \begin{cases} 1\text{인 가구} : & \{1,250\text{만원} - \text{안심소득제 인정소득}\} \times 40\% \\ 2\text{인 가구} : & \{2,500\text{만원} - \text{안심소득제 인정소득}\} \times 40\% \\ 3\text{인 가구} : & \{3,750\text{만원} - \text{안심소득제 인정소득}\} \times 40\% \\ 4\text{인 가구} : & \{5,000\text{만원} - \text{안심소득제 인정소득}\} \times 40\% \\ 5\text{인 이상 가구} : & \{6,250\text{만원} - \text{안심소득제 인정소득}\} \times 40\% \end{cases}$$

8) 본 장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변양규(2017a) 및 변양규(2017b)가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9) 가계동향조사 데이터 상 안심소득제로 대체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주거, 자활급여 및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만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하는 사회수혜금 전체를 공제하였다 따라서 안심소득제로 통합되는 각종 수혜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공제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장려금제도와 비교하면 안심소득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근로장려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그러나 안심소득제 하에서는 기준소득 5,000만 원과 인정소득 0원의 차이 5,000만 원의 40%인 2,000만 원을 지원받아 1인당 연간 500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둘째, 안심소득제를 근로의욕 제고라는 측면에서 기존 근로장려금제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4인 가구가 근로를 통해 인정소득이 1,000만 원이 된 경우 기준소득 5,000만 원과 인정소득 1,000만 원의 차이 4,000만 원의 40%인 1,6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안심소득제 하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2,0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줄었지만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2,600만 원(인정소득 1,000만 원 + 안심소득 지원금 1,600만 원)으로 증가하고 1인당 연간 650만 원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장려금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해서 얻은 소득의 21%를 추가로 지원한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안심소득제는 4인 가구의 경우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은 보장하며, 근로를 통해 추가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추가소득의 60%(위 사례에서는 1,000만 원의 60%인 600만 원)만큼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므로 근로의욕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금제도보다 우월하다.

안심소득제를 시행할 경우 소요되는 총예산은 개별 가구에 대한 지원금의 합계에서 안심소득제에 의해 대체되는 사회수혜금을 공제한 것이 된다. 2016년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761만 가구 중 약 45.9%에 해당하는 809만 가구의 인정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서 안심소득제 하에서 지원¹⁰⁾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지원액은 약 37조 6,828억 원이고 연간 1 가구당 466만 원, 1인당 177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원 받는 가구에 속한 인구는 모두 약 2,12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6.7%다. 한편 안심소득제로 대체되는 사회수혜금 항목을 모든 가구에 대해 합하면 약 12조 3,752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안심소득제를 시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지원금 총액 37조 6,828억 원에서 사회수혜금 절약분 12조 3,752억 원¹¹⁾을 공제한 25조 3,076억

10) 비록 안심소득제 하에서 지원을 받지만 지원 금액이 공제된 사회수혜금보다 작을 경우에는 안심소득제 시행 이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안심소득제 하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반드시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구별 실제 처분가능소득 증감은 본 연구 마지막 부분에 있다.

11) 사회수혜금 절약분을 가계동향조사가 아닌 정부 부처별 예산을 통해 추정하여도 유사한 결과

〈표 2〉 안심소득제 지원 대상 및 금액

	가구수 및 비중	인구수 (명) 및 비중	지원 금액 (원)	
			가구당	1인당
지원>0	8,087,028 (45.9%)	21,238,656 (46.7%)	4,659,655	1,774,254
지원=0	9,526,567 (54.1%)	23,660,126 (53.3%)	-	-
전체	17,613,595	45,504,540	-	-

출처: 2016년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해서 저자들 추정.

원이다.

V. 안심소득제 및 기본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제도 하에서 가구소득을 계산한 뒤 소득격차를 측정하는 지표를 계산하고자 한다. 한편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정도를 직접 비교하기 위하여 안심소득제 예산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15세 이상 인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의하면 15세 이상 가구원은 총 37,121,215명이므로 안심소득제 총예산 37조 6,828억 원을 균등하게 나눠줄 경우 1인당 연간 1,015,127원이 기본소득제 하에서 지급된다. 기본소득제 하에서의 분배 방법은 안심소득제 총예산 37조 6,828억 원을 균등히 분배하는 대신에, 총예산에서 사회수혜금 12조 3,752억 원을 공제한 25조 3,076억 원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하면 기본소득제 하에서 1인당 연간 681,756원이 지급된다. 한편, 각 제도 하에서 가구의 소득을 통계청 방식과 동일하게 균등화하여 소득격차 지표를 산출하였다. 이는 소득분배지표 작성에

를 얻을 수 있다. 2016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주거, 자활급여 예산 4조6,819억 원, 취약계층지원 2조 4,989억 원, 근로·자녀장려금 1조 8,244억 원, 실업소득유지·지원금의 40% 2조 2,808억 원, 산재보험급여(요양 및 간병급여 제외)의 40% 1조 3,544억 원의 합인 12조 6,404억 원으로 추정된다. 실업소득유지·지원금은 기획재정부(2017), 산재보험급여는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급여 수급현황(2014-2016년), 나머지는 기획재정부(2016)에서 인용하였다. 안심소득제는 실업 및 산재급여를 유지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으로 간주하여 유효한계세율(effective marginal tax rate)인 40%를 곱한 것을 절약분으로 본다.

사용하는 소득자료는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 후생수준을 비교 가능하도록 가구소득/ $\sqrt{\text{가구원 수}}$ 방식을 통해 균등화하는 OECD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¹²⁾

<표 3>은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안심소득 및 기본소득 하에서 각종 소득격차 지표를 나타낸다. 2016년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44이며, 현행 조세 및 복지제도 하에서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98이다.¹³⁾ 현행 소득재분배정책도 지니계수를 0.046포인트(13.4%) 낮추어 상당한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있다. 안심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지니계수는 0.259로 크게 하락하여 시장소득 대비 0.085포인트(24.7%)의 완화 효과가 있다. 이는 기존 소득재분배정책의 두 배에 가까운 효과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제 하에서 지니계수는 0.294로 시장소득 대비 0.050포인트(14.5%) 감소에 그쳐 25조 원의 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세정책과 유사한 소득격차 완화 효과를 보인다.¹⁴⁾ 이는 기본소득제 하에서 지원 방식이 저소득층 중심이 아니며 1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소득은 비록 증가하지만 상대적인 개인 소득격차는 크게 완화되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한편, 현재 소득분배정책 결과(즉, 처분가능소득 기준)를 기준으로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가 각각 25조 3,0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얼마나 추가적으로 소득격차를 완화하는지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보아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안심소득제는 현재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 0.298를 0.039포인트(13.1%) 떨어뜨려 0.259까지 낮춘다. 그러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한 기본소득제는 0.004포인트(1.3%) 감소하는 데 그친다.

지니계수 이외 다른 소득격차 지표인 P90/P10 및 5분위배율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

12) 균등화한 소득을 가구원 각각의 개인소득으로 간주하여 개인단위의 소득분배지표를 계산하는 것이 OECD의 방식이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13) 통계청의 경우 가계동향조사에 농가경제조사 자료까지 통합하여 전체가구라 지칭하지만 본 연구의 전체 가구는 가계동향조사의 전체 가구만을 지칭한다. 따라서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격차지표는 통계청 수치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참고로 농가경제조사를 사용하지 않는 2인 이상 비농가 또는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지니계수 등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료와 일치한다.

14) 기본소득제를 통해 안심소득제 하의 지니계수(0.25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5세 이상 국민에 대해 1인당 409만 원을 지원해야 하며 총예산은 약 186조1,136억 원이 소요된다. 대체되는 사회수혜금을 감안해도 기본소득제 하에서는 약 173조7,384억 원이 소요된다. 이는 2016년 기준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배분된 정부예산 123조4,000억 원의 약 1.4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다. 아래 표를 보면 시장소득 기준 P90/P10은 7.51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의 7.51배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현재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시행된 이후, 즉 시장소득에서 각종 세금을 제하고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을 더한 처분가능소득의 경우 P90/P10은 4.50까지 하락한다. 안심소득제를 시행할 경우 P90/P10은 무려 3.20까지 하락하여 안심소득제가 현행 소득재분배정책 하에서의 소득격차의 정도를 추가로 무려 1.30포인트(28.9%)나 하락시킨다. 반면, 동일한 예산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경우 P90/P10은 4.44까지만 하락하여 소득격차 완화율은 1.3%에 그친다.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는 5분위배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시장소득 기준 5분위배율은 8.44이다. 즉, 상위 20%의 평균소득은 하위 20% 평균소득의 8.44배이다. 현행 소득재분배정책을 시행한 이후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5분위배율을 추정하면 5.25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안심소득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5분위배율이 3.87까지 하락하여 현행 소득분배정책에 추가로 소득격차의 정도를 1.38포인트(26.1%) 하락시킨다. 반면, 기본소득제 시행 이후에는 5분위배율이 5.15까지만 하락하여 추가적인 소득격차 완화 효과는 1.9%에 그친다. 따라서 지니계수뿐만 아니라 P90/P10 및 5분위배율로 측정한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도 현행 제도 및 기본소득제에 비해 월등하다.

한편, 소득분포를 바탕으로 소득격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중위소득의 50%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비중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율이다. 현재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8.3%이다. 그리고 현행 소득재분배정책 이후 상대적 빈곤율은 14.1%까지 하락한다. 안심소득제는 상대적 빈곤율을 무려 9.0%까지 하락시켜 처분가능소득 대비 상대적 빈곤율을 5.1%포인트나 하락시키는 효과를 보여준다. 반면, 기본소득제 하에서의 상대적 빈곤율은 13.9%로 처분가능소득 대비 하락 효과가 0.2% 포인트에 불과하다.

한편, 소득분포를 바탕으로 소득격차의 정도를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인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중산층 비중을 측정하는 것이다. 시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은 2016년 현재 60.4%이고 현행 소득재분배제도 하에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66.4%까지 증가하여 3명 중 2명이 중산층에 포함된다. 안심소득제를 시행할 경우 중산층 비중은 무려 72.8%까지 증가하여 거의 4명 중 3명이 중산층에 포함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반면,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중산층 비중이

〈표 3〉 소득격차 완화 효과 비교 (2015년 전체 가구 기준)

	시장 소득 (A)	처분가능소득 (B)		안심소득 (C)			기본소득(D)		
		(B)-(A)	(C)-(A)	(C)-(B)	(D)-(A)	(D)-(B)			
지니계수	0.344	0.298	-0.046	0.259	-0.085	-0.039	0.294	-0.050	-0.004
p90/p10	7.51	4.50	-3.01	3.2	-4.31	-1.3	4.44	-3.07	-0.06
5분위배율	8.44	5.25	-3.19	3.87	-4.57	-1.38	5.15	-3.29	-0.1
상대적 빈곤율(%)	18.3	14.1	-4.2	9.0	-9.3	-5.1	13.9	-4.4	-0.2
중산층 비중(%)	60.4	66.4	6.0	72.8	12.4	6.4	67.4	7.0	1.0
DER 양극화지수	0.214	0.194	-0.02	0.183	-0.031	-0.011	0.193	-0.021	-0.001

주: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2016년)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작성.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니계수와 약간의 차이가 있음. 이는 통계청의 경우 가계동향조사에 농가경제조사 자료까지 통합하여 전체가구라 지칭하기 때문임. 본 연구에서 전체 가구는 가계동향조사의 전체 가구만을 지칭. 참고로 농가경제조사를 사용하지 않는 2인 이상 비농가 또는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지니계수 등 모든 소득분배 지표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료와 일치함.

출처: 2016년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해서 저자들 추정.

67.4%에 머물러 안심소득제에 비해 소득재분배를 통해 중산층 비중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미약하다.

소득분포의 모양을 측정하는 또 다른 일반적인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소득양극화(income bi-polarization)이다. 소득양극화는 두 개 혹은 여러 개의 중심으로 소득분포가 집락화(clustering)하여 이질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 간의 거리는 크지 않지만 상위층에 여러 명이 모여 있고 하위층에도 여러 명이 모여 있다면, 비록 소득격차 정도는 낮을 수 있지만 소득양극화 정도는 높다. 이처럼 소득양극화의 개념은 소득분포 상 여러 개의 이질적인 집단이 생기거나 중산층이 붕괴하고 소득분포가 양 극으로 갈라지는 정도를 측정한다.¹⁵⁾

양극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양극화를 측정하는 대표적 예로는 Wolfson¹⁶⁾의 양극화지수가 있으며 Esteban and Ray(1994)의 ER¹⁷⁾ 지수, ER 지수를 계

15) 소득양극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변양규 외(2012)를 참조하기 바란다.

16) 중위소득 근처의 소득 분산이 커질수록 소득양극화가 커진다고 정의하는 Wolfson(1994, 1997)

지수는 $W = 2(2(0.5 - L(0.5)) - G) \frac{u}{m}$ 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L(0.5)$ 는 하위 50% 소득계층이 전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G, u, m 은 각각 상대지니, 평균 및 중위값을 나타낸다.

량한 Esteban et al.(1999)의 EGR¹⁸⁾ 지수, 그리고 ER 지수를 연속변수로 확대적용한 Duclos et al.(2004)의 DER¹⁹⁾ 지수가 있다.

위 표에는 4가지 소득분포에 대해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DER 양극화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DER 양극화 지수는 0과 1 사이 숫자이며 클수록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높음을 의미한다. 우선 DER 양극화 지수로 측정한 시장소득 기준 우리나라 소득분포의 양극화 정도는 0.214이다.²⁰⁾ 그리고 현행 소득분배제도 하에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한 소득분포의 양극화 정도는 0.194로 개선된다. 한편, 안심소득제를 시행할 경우 소득분포의 양극화 정도는 0.183까지 하락한다. 이는 안심소득제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보다 많이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제 하에서 양극화 정도는 0.193으로 현행 소득분배제도 하에서 소득분포의 양극화 정도인 0.194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이처럼 안심소득제의 소득양극화 현상 완화 정도가 기본소득제에 비해 큰 것은 안심소득제 하에서는 저소득층일수록 지원이 커져 소득분포의 하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심 쪽으로 이동하면서 양 극단의 분포가 줄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안심소득제는 현행 소득재분배정책에 비해 소득격차의 정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제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월등하다. 동일한 예산을 투입할 경우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기본소득제에 비해 월등한 것은 안심소득제 하에서는 가구원 규모에 따라 가구소득이 특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기본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작은 것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기 때문이다.

이상에서는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기본소득제보다 안심소득제가 더 유효한 정책임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개별 가구의 입장에서는 특정 제도 하

17) ER 지수는 $ER = \sum_{i=1}^n \sum_{j=1}^n p_i^{1+\alpha} p_j |y_i - y_j|$ 로 정의되며 y_i 및 p_i 는 그룹 i 의 평균소득 및 모집단

에서의 비중을 나타낸다. 모수 $\alpha \in [1, 1.6]$ 은 사회 전체의 양극화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낸다.

18) ER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모집단을 일정 개수의 그룹으로 나뉘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각 그룹의 소득분산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정보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Esteban et al.(1999)는 각 그룹의 소득분산을 감안하여 정보손실을 최소화하는 EGR 지수를 제안했다.

19) DER 지수는 ER 지수 및 EGR 지수를 연속변수에 대해 정의한 것으로 $DER =$

$\iint f(y_i)^{1+\alpha} f(y_j) |y_i - y_j| dy_i dy_j$ 로 나타낼 수 있다.

20) 통계프로그램 Stata에서 Araar and Duclos(2009)의 package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에서 본인의 소득 증감이 더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소득분위별로 안심소득제를 도입하였을 경우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가구, 인구 규모 및 평균 소득 변화 규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4>를 살펴보면 안심소득제 시행 이후 전체 가구 중 공제되는 사회수혜금보다 안심소득제로 지원받는 금액이 더 커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최소한 현재 처분가능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가구는 약 1,571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89.2%에 해당하고 전체 인구 중 89.3%인 4,061만 명이 여기에 포함된다.

한편, 전체 소득분포를 10분위로 나누었을 경우, 안심소득제 실시 이후 소득 1분위에서 5분위(즉, 하위 50%) 가구의 평균소득은 모두 증가하며 특히 1분위(하위 10%) 가구의 소득은 연간 약 453만 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6~10분위(상위 50%) 가구의 평균소득은 안심소득제 도입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가구에서 기존에 지원받은 사회수혜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동시에 소득이 일정

<표 4> 안심소득제 실시 이후 소득 증가(또는 유지) 가구 및 인구

소득 분위	가구		인원		연간 소득증가분 (원)
	가구수	비중(%)	인원수	비중(%)	
1	2,707,745	93.9	4,361,871	95.7	4,533,549
2	1,861,067	91.2	4,317,526	94.9	3,501,005
3	1,569,672	93.0	4,351,304	95.7	2,931,629
4	1,439,012	92.0	4,320,440	94.8	1,846,532
5	1,368,635	88.5	4,053,430	89.2	604,066
6	1,286,657	84.7	3,817,268	83.8	-207,489
7	1,262,343	82.0	3,695,084	81.3	-744,130
8	1,295,341	83.6	3,720,237	81.7	-598,094
9	1,372,431	85.7	3,826,442	84.2	-473,018
10	1,544,504	91.9	4,150,535	91.2	-316,477
전체	15,707,407	89.2	40,614,137	89.3	1,436,823

주: 1) 소득분위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함.

2) 가구 수 및 비중은 해당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연간 소득 증가분은 해당 소득분위에 속하는 모든 가구의 평균 소득 변화분을 의미함.

출처: 2016년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해서 저자들 추정.

수준 이상이어서 안심소득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6~10 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 정도는 평균적으로 연간 약 21만 원에서 74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6~10 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연간 4,227만 원에서 9,434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안심소득제 도입으로 인한 소득 감소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VI. 시사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쉬우나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과연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돕는 것이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것인지 답을 구하기 위해 최근 논의의 중심에 있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대안으로 안심소득제를 제안하였고 그 소요예산을 추정하였다. 또한, 두 제도의 소득격차 완화 정도를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우선 첫째, 현재의 소득재분배정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시장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0.344이지만 현재 소득재분배 과정을 거치게 되면 0.298로 하락한다. 뿐만 아니라 P90/P10,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중산층 비중 및 DER 양극화 지수로 살펴봐도 현재 소득재분배정책은 소득격차 및 양극화를 상당히 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소득부족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안심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소득격차를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심소득제의 기본 원리가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심소득제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1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나눠주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소득격차 및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효과는 매우 미미했다. 이는 기본소득제 하에서는 소득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분배하므로 소득의 상대적 분포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효율적으로 돕는 방법은 가난한 사람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다수 국민에게 재산, 소득,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을 보장하자는

기본소득제가 논의되고 있다. 핀란드 등 기본소득제를 실험하는 모든 국가들은 실업급여 등 기존 사회보장 혜택을 대체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단순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하에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복지제도에 더해 모든 국민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다른 형태의 기본소득제가 논의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정해지는 안심소득제와는 달리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가난한 사람을 어떤 방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제한된 예산 하에서 소득격차 축소 효과가 월등한 안심소득제가 기본소득제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 모두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제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안심소득제의 단순함은 제도적 원리의 단순성에 기인하지만 기본소득제의 단순함은 획일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획일성은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제도적 경직성을 초래할 것이다.

한편,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의 기본소득제의 지원 규모는 ‘의미 있는 일정 소득’을 보장할 수 없는 작은 규모이다. 기본소득제가 근로의욕을 위축시키지 않는 복지제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액을 나눠주는 실험보다는 소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 복지제도의 상당 부분을 폐지하는 대신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당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실험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접근 방법이다.

최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므로써 소비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득·소비·투자·성장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책의 실효성과는 별개로,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제보다는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지원을 추진하는 안심소득제가 정책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안심소득제 실시에 필요한 예산의 순증은 25.3조 원이다. 이 정도의 예산 증가는 2017년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노동 분야 사업 예산인 129.5조 원(기획재정부, 2017)을 절약하고 안심소득제 실시로 인한 국내총생산의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 등으로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부족분이 발생한다면 안심소득제가 대한민국의 확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증세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안심소득제의 기본 원리와 효과를 단순한 환경 하에서 분석하기 위해 정태적 관점에서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동태적 효과를 고려한 연구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안심소득제 시행 이후 노동공급의 내생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로 인한 소득격차 완화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방안 안내』. 2015.
- 국세청.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희망사다리!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 보도자료. 2016. 5. 4.
- 국토교통부. 『201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2016.
- 기획재정부. 『2016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2016.
- 기획재정부. 『2017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2017.
- 박기성. 「안심소득제」, Mimeo, 한국경제연구원, 2016. (a)
- 박기성. 「가파른 최저임금인상의 고용 및 경제성장 효과」. 『규제연구』 25권 2호 (2016. 12): 3-17. (b)
- 박기성. 「안심소득제」. 복거일 외. 『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 pp. 111-145. 서울: 한경 BP, 2017.
- 박기성·변양규. 「한국형 안심소득제 효과와 소요예산 추정」. Mimeo. 한국경제연구원. 2016.
- 박기성·변양규. 「안심소득제의 효과」. Mimeo. 한국경제연구원, 2017.
- 변양규.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의 소득 불균형 완화 효과 비교」. 복거일 외. 『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 pp.147-184. 서울: 한경 BP, 2017. (a)
- 변양규. 「안심소득제의 소득불균등 완화효과 및 소요예산 추정」. KERI Insight. 한국경제연구원, 2017. (b)
- 변양규 외. 「양극화 논쟁. 그 오해와 진실」. 정책연구 12-01. 한국경제연구원, 2012.
- 보건복지부.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6. (a)
- 보건복지부. 『2016 의료급여사업안내』. 2016. (b)

- 보건복지부. 『2016년 자활사업 안내 (I)』. 2016. (c)
- Araar, A. and J. Duclos. *DASP: Distributive Analysis Stata Package.*” *User Manual.* Université Laval. PEP. CIRPÉE and World Bank, 2009.
- Duclos, J., Esteban, J., and D. Ray.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72 (6) (November 2004): 1732-1772.
- Esteban, J. and D. Ray. “On the Measure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62 (4) (July 1994): 819-851.
- Esteban, J., Gradin, C., and D. Ray. “Extensions of a Measure of Polarization. with an Application to the Income Distribution of Five OECD Countries.” Working Paper 24. Institute de Estudios Economies de Galicia Pedro Barrié de la Maza, 1999.
- Friedman, M.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 Moffitt, R. “The Negative Income Tax and the Evolution of U.S. Welfare Polic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7 (3) (Summer 2003): 119-140.
- Wolfson, M. “When Inequalities Diverge.” *American Economic Review* 84 (2) (May 1994): 353-358.
- Wolfson, M. “Divergent Inequalities: Theory and Empirical Result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3 (3) (December 1997): 401-421.

abstract

Effects of Safety Income System**Ki Seong Park*·Yanggyu Byun****

To prevent the disincentive of labor supply under the current welfare system, we suggest the safety income system, a Korean version of negative income tax. Under the proposed system, for example, a household with four members whose annual income is less than 50 million wons will get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Under the safety income system, labor supply increases and so does the gross domestic product. The disposable income of low-income households increases, which alleviates the income gap among households. Analyzing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we show that under the safety income system the disposable income differentials among households are reduced much more than under the current welfare system or under the universal basic income system.

Keywords: negative income tax, safety income system, universal basic income system, increase in labor supply, alleviation of income gap

* Department of Economics, Sungshin University

** KIM & CHANG